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1.

발 의 자 : 조은희 · 이만희 · 김용태
이성권 · 서천호 · 신성범
박정하 · 김재섭 · 배준영
박상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, 번호변작기의 제조·유통 자체는 직접적인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최근 보이스피싱·스미싱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. 특히 발신번호를 가족·지인·공공기관 번호로 사칭하도록 변작하거나, 가족·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 사기가 결합되면서 상대방을 기만하는 수법이 확산되고, 이용자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번호변작기의 제조, 수입, 배포, 판매,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통신망 이용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

32조의20 신설 등).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0(딥보이스등 방지 및 이용자보호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등(이하 “딥보이스등”이라 한다)을 이용한 명예훼손, 사기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딥보이스등의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(이하 “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,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딥보이스등의 사용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개발·고도

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,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 구축·운영의 구체적인 기준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4조의2제2항 본문 중 “제공하여서는”을 “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·기기를 제조, 수입, 판매, 대여 또는 배포하여서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조치를 시행하기”를 “조치 및 제5항에 따른 발신번호 인증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”로 한다.

4. 제5항에 따른 발신번호 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신번호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·검증하기 위한 시스템(이하 “발신번호 인증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95조의2제5호 중 “제공한”을 “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·기기를 제조, 수입, 판매, 대

여 또는 배포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2조의20(딥보이스등 방지 및 이용자보호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등(이하 “딥보이스등”이라 한다)을 이용한 명예훼손, 사기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딥보이스등의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(이하 “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,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딥보이스등의 사용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</u> <u>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</u>

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 ① (생략)
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공익을 목적으로

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구축
·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「정보통신
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
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
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
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
원할 수 있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개발
· 고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
경우 관계 행정기관, 관련 기관
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
축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딥보이스등탐지시
스템 구축·운영의 구체적인
기준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
-----제공하거나 송신인의
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

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(생략)

④ (생략)

<신설>

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·기기를 제조, 수입, 판매, 대여 또는 배포하여서는-----.

③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제5항에 따른 발신번호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⑥·⑦ (생략)

제95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

는 바에 따라 발신번호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·검증하기 위한 시스템(이하 “발신번호 인증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⑥ -----

-----조
치 및 제5항에 따른 발신번호 인증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-

-----.

⑦·⑧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)

제95조의2(벌칙)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<u>제공한 자</u>	----- ----- <u>제공하</u> <u>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</u> <u>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</u> <u>수 있는 장치·기기를 제조,</u> <u>수입, 판매, 대여 또는 배포한</u> ---
--	---